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10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
보건복지위원회(2012년 6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

- 본 조례안은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3조~제14조가 개정('12. 3.16 시행)되어 중앙 건강가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,
-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의 “건강가정위원회” 관련 규정을 삭제(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)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- 본 조례안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1)개정(2012.3.16시행)에 따라 근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, 운영실적이 저조한 “서울특별시 건강가정위원회” 관련 규정을 삭제(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)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 및 시·도 건강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
 -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는 단 1회(2007년 11월)만이 개최되었고, 이후 행정안전부의 폐지 확정(2008년 5월 27일, 국무회의)에 따라 개최되지 않아,
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.

1) 건강가정기본법 [시행 2012.3.16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5. 토론요지 : 없음.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7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(제3조부터 제10조까지)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	<삭 제>
제3조 (설치 및 기능) ①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강가정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. 1.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 립·시행 2.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 한 사항 3.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. 그 밖에 건강가정정책과 관련하 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	<삭 제>
제4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③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, 복지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및 해 당 관계공무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1. 시의회 의원 2.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	<삭 제>

현행	개정안
<p><u>풍부한 자</u></p> <p>3. <u>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</u></p> <p>4. <u>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정 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자</u></p> <p>④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	
<p>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<u>위원장은</u>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<u>부위원장은</u>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〈삭제〉</p>
<p>제6조 (회의 등) ①<u>위원회의 회의는</u>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p> <p>②<u>정기회는</u>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③<u>위원회의 회의는</u>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〈삭제〉</p>
<p>제7조 (간사) <u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</u></p>	<p>〈삭제〉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된다.</p>	
<p>제8조 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9조 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10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<삭 제></p>